

<p>都市計劃事業(聚落構造改善事業)施行에 따른 被害補償對策에 關한 請願審查報告書</p> <p>1993. 3.26 內務委員會</p> <p>1. 審查經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請願者 서울特別市 瑞草區 良才洞 206-10 成孝錫 外 9人 ○紹介議員：許 沔議員(瑞草 第4選舉區) ○接受日字：1993.1.9 ○回附日字：1993.1.16 ○上程日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60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93.2.23)－請願審查小委員會 構成 • 第61回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93.3.24)－意見書 採擇 <p>2. 請願要旨 說明(說明者：許 沔議員)</p> <p>가. 經 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8年-81年 施行된 聚落構造改善事業 施行 [事業主體는 住民으로 構成된 '聚落構造改善事業推進委員會'이나, 事實上 江南(現 瑞草)區廳 主管으로 施行]中 ○土地確保 過程에서 現在 請願人 所有 建物 等이 位置한 3,430m²에 對하여는 元來 土地所有者 金熙京과의 協議가 圓 滿하지 못하여, ○請願人 等은 서울地方土地收用委員會의 收用 裁決을 得하여 補償金을 供託(79. 5.25)하고 所有權을 收用取得한 後 新 築 入住하였으나, 供託書 作成時 條件 等을 理由로 元來 土地所有者 金熙京이 提起한 中央土地收用委員會의 異議裁決 및 大法院에서 土地收用裁決 原因無效 判決이 確定(86.8.19)됨에 따라, ○元來 土地所有者 金熙京은 다시 建物撤 去 및 土地引渡訴訟을 提起, 1審에서 勝訴하였고, 請願人 等은 이에 抗訴中 이나, 事實上 勝訴期待가 어려운 實情 으로 請願人 等은 土地主의 強制執行으 로 全 財產을 蒼게 될 形便임. <p>※位置：서울特別市 瑞草區 良才洞 205.</p>	<p>206番地(一名 찬디마을) 34世帶 (建物主 10世帶, 貰入者 24世 帶) 面積 3,430m²</p> <p>나. 要 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問題된 土地를 서울特別市에 寄附採納할 것이니, 서울特別市는 이를 让渡받아 訴訟을 承繼하여 訴訟에 臨하고, ○同 地域을 公共施設地域 혹은 緑地帶로 都市計劃施設 公告 後 請願人等에 對하 여 移轉對策을 講究하거나, ○民訴法 第72條의 獨立當事者로 訴訟에 參加하여 敗訴時 履行主體가 되어 自然 스레 請願人 等은 서울特別市로부터 該 當土地에 對한 所有權喪失의 代價를 行 政處分의 方法에 依하여 請求할 수 있 다고 思料되고, ○民訴法 第16條의 規定 等에 依하여 서울特別市가 繫留中인 抗訴審에 어떤 方法으로든지 參與하여 賠償範圍를 司法 府 判斷에 依하여 確定되는 方案 ○其他 政策的 非常對策을 通하여 請願人 들의 역을함을 解決하는 方案 等 좋은 解solution策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請願함. <p>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俞炳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本 請願은 請願人 等의 請願 事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事情이 역을함을 이루 말 할수 없는 바, 다음과 같은 事由로 市長이 處理하도록 移送함이妥當할 것 으로 思料됨. 첫째：外形上 事業主體는 聚落構造改善事 業推進委員會로 되어 있으나, 事 實上 市의 指示에 依하여 江南區 에서 舉區的, 主導的으로 推進한 點 둘째：決定的 “<u>ホム</u>”으로 指摘된 供託書 작성과 供託 過程에서 擔當 公 務員의 過失이 決定的으로 認定 되는 點 셋째：違法 有責한 行政指導에는 賠償을
--	---

<p>하여야 한다는point</p> <p>넷째：現代行政法의一般原則의 하나인信賴保護의.principle上請願人等의信賴는마땅히保護되어야 한다는point</p> <p>○또한， 다른侧面에서 보더라도 15年間 지치고 억울한請願人等을 向하여 서울特別市를相對로 損害賠償訴訟을 提起</p>	<p>하도록 종용할 만큼의 잘못이 있다고認定다면 果敢한 政策的 決斷을 通하여 請願人等의被害을 救濟하여 주는것이 마땅하다고思料됨。</p> <p>4. 小委員會構成</p> <p>○小委員長：白中元議員</p> <p>○委員：李迎春，李丁煥議員</p>				
5. 質疑 및 答辯要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質疑要旨</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答辯要旨</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 ○李丁煥議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在 繫留中인 訴訟에 參加 않는 理由 • 增換地 還收할 길 없나 ○李永鎬議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잘못 認定하나 • 抗訴審에 參與할 用意 • 請願人의 權益保護方案 研究한 것 있는가 </td><td style="padding: 10px;"> ○內務局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補助參加 實益 없음 ○內務局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顧問辯護士 3人은 서울市에 責任이 있다고 하고, 3人은 없다고 함. 司法院判斷에 말긴다는 것이 市의立場 </td></tr> </tbody> </table>	質疑要旨	答辯要旨	○李丁煥議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在 繫留中인 訴訟에 參加 않는 理由 • 增換地 還收할 길 없나 ○李永鎬議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잘못 認定하나 • 抗訴審에 參與할 用意 • 請願人의 權益保護方案 研究한 것 있는가 	○內務局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補助參加 實益 없음 ○內務局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顧問辯護士 3人은 서울市에 責任이 있다고 하고, 3人은 없다고 함. 司法院判斷에 말긴다는 것이 市의立場 	
質疑要旨	答辯要旨				
○李丁煥議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在 繫留中인 訴訟에 參加 않는 理由 • 增換地 還收할 길 없나 ○李永鎬議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잘못 認定하나 • 抗訴審에 參與할 用意 • 請願人의 權益保護方案 研究한 것 있는가 	○內務局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補助參加 實益 없음 ○內務局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顧問辯護士 3人은 서울市에 責任이 있다고 하고, 3人은 없다고 함. 司法院判斷에 말긴다는 것이 市의立場 				
6. 討論： 없음 7. 小委員長의 活動經過報告 要旨 (小委員長 白中元議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4次의 小委員會를 開催하고 關係 區廳과 現場을 踏查한 바， 請願人等이 억울하고， 그處地에同情이 갈뿐 아니라， 서울市의 責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事案이 重大하고 뚜렷한 解決策이 없으므로， 委員會에서 再審查하여 衆智를 모아 結論을 맺어주기 바람。 8. 意見書 採擇 動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動議日字 및 動議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61回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93.3.24) 白中元議員 ○動議內容(意見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別添 意見書 參照 9. 審查結果 滿場一致(在席 13人)로 白中元 議員이 動議한 意見書 채택 10. 少數意見 要旨： 없음 11.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意見書</p>				

<p>○ 서울特別市 瑞草區 良才洞 205·206番地 一帶(一名 잔디마을)의 都市計劃事業 施行에 따른 被害補償 對策require 請願事項을 深度 있게 檢討하여 본 結果</p> <p>○ 聚落構造改善事業을 計劃 指導 監督한 서울 市 當局의 잘못이 認定될 뿐 아니라 本件 質疑 答辯 過程에서도 執行部 關係部署의 一部 잘못이 認定되므로</p> <p>○ 얹울한 市民을 保護한다는 次元에서 市 執 行部는 繫留中인 訴訟에 積極 參與하는 等 請願人의 權益保護를 為하여 多角的인 對策 을 講究할 것.</p>	<p>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report를 차세히 들은 후 質疑 答辯 및 討論過程을 거쳐 深度 있게 審查한 結果, 大은豫算이 所要되고 事 案이 중대하므로 더욱 深度 있게 審查하기 위하여 小委員會를 構成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 小委員會는 2回에 걸친 會議와 여러 차 례의 懇談會를 開催하여 執行部 그리고 專門 教授와 討論會를 가졌고 關聯 資料들을 면밀히 檢討하여 委員會에 審查report하였습니다.</p> <p>當委員會는 1993年 3月 19日 第61回 臨 時會 第1次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小委員會의 審查result report와 그 동안 각 委員들이 研究한 것을 토대로 深度 있게 審查한 結果, 93年 度豫算에 이事業과 關聯된 100億원이 策定되어 있으므로 請願의 趣旨를 적극 受容 하여 이미 計劃한 바에 따라 조속히 復元 推進함이 妥當하다고 判斷되어 執行部에 보낼 意見書 採擇案을 漫場一致로 可決하고 本會議 에 附議하기로 議決하고 이에 따라 風納土城 復元要求에 關한 請願에 대한 意見書 採擇案 을 提案하게 되었습니다.</p> <p>意見書 採擇案의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1970年 10月 26日 史蹟 第11號인 風納土城은 文化財保護 區域으로 指定된 이래 總 2,680m 중 1977年 度에 154m를 指定解除하고 1978年에 446 m를 復元하였을 뿐 殘餘 2,080m가 繼續 放置되어 土地所有者들이 財產權侵害에 따른 民願이 상존해 있으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가 이미 契約한 바에 따라 조속한 時日内에 復元事業을 施行하므로 文化遺產을 後孫에게 길이 물려주고 地方財政을 건실하게 運用토록 執行部에 促求하기 위함입니다.</p> <p>다음에 主文을 말씀드리면 史蹟 第11號인 風納土城은 1970年 10月 26日 文化財保護區 域으로 指定된 이래 154m는 指定解除하고 446m를 復元하였을 뿐 殘餘 2,080m가 未復 元 狀態로 繼續 放置되어 土地所有者들의 財產權侵害에 따른 民願이 상존해 온 狀況 에 本委員會에 請願書가 提出된 바, 1993 年에 段階의으로 推進하기로 이미 決定된</p>
9. 風納土城復元要求에 關한 請願(金鍾雄議員 紹介)	(16時 02分)

○議長 金瓊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風納
土城復元要求에 關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文化教育委員會 劉起鍾議員 나오셔서 審查結
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起鍾議員 文化教育委員會所屬 劉起鍾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特別市 松坡區 風納1洞 83番地 49號 이낙기로부터 金鍾雄議員紹介로 92年 10月 17日 接受되어同年 10月 20日 當委員會에 回附된 風納土城復元要求에 關한 請願 審查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請願의 要旨를 말씀드리면, 史蹟 第11號인 風納土城이 1970年 10月 26日 文化財保護區域으로 指定된 이래 154m는 指定解除하고 446m를 復元하였을 뿐 나머지 2,080m가 未復元 狀態로 繼續 放置되어 土地所有者들의 民願이 크게 일고 있으니 첫째,豫算을 確保하여 未復元된 2,080m를 復元할 것. 둘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指定解除하여 私有財產權을行使할 수 있도록措置할 것을 骨子로 하고 있습니다.

當委員會에서 審查한 過程과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年 11月 9日 第59回 臨時會 第2次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執行部의 提